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7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4860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734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이윤선

변론종결 2021. 5. 21.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 3. 3. 접수 제209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6. 접수 제4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10. 3. 2. 5,000만 원을, 2010. 5. 10. 9,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나. C는 2010. 3. 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3. 5. 6.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및 D는 C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047호(본소), 2015가합571238(반소)], 위 법원은 2016. 6. 2. C는 원고 및 D에게 44,552,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및 D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069(본소), 2016나2038076(반소)], 위 법원은 2017. 9. 15. C는 원고 및 D에게 2,724,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및 D의 나머지 항소와 C의 항소 및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C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75874(본소), 2017다275881(반소)] 위 법원은 2018. 1. 25. C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는 2010. 3.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10. 3. 2. 차용하며 2015. 1. 1.까지 기일 엄수하여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5. 10. 위 차용증에 ‘2010. 5. 10. 90,000,000원을 추가 차용하며 2015. 1. 1.까지 최대한 합계 일억 사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이 법원의 E조합, F조합,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C가 피고의 아들이라는 사정과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제기하는 의구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5. 1.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욱

별지1

1. 충북 영동군 H 답 1,448㎡
2. 충북 영동군 I 답 446㎡
3. 충북 영동군 J 답 1,924㎡. 끝.

별지2

충북 영동군 K 답 1,121㎡. 끝.

